

제414회 임시회
' 23. 1. 25.(목)

전문위원 검토보고서

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

정책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

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1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2. 제출일자 및 회부일자

○ 제출일자 : 2024년 1월 15일

○ 회부일자 : 2024년 1월 16일

3. 제안이유

-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에 따라 시·도지사는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하여 ‘시·도응급의료지원단’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함
- 이에 전문성과 효율성을 갖춘 전문기관 위탁을 통하여 지역중심 완결형 응급의료체계를 구축하고자,
-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에 따라 응급의료지원단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는 사항에 대해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

4. 주요내용

- 대상사무 :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운영
- 위탁기간 : 2024년 위탁개시일 ~ 2027년(3년)
- 수탁기관 :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
- 선정방법 :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6조(수탁기관의 선정)에 따름
- 위탁금액 : 年306백만원(기금^{40%}125, 도비^{60%}181) * '24년 예산기준
- 위탁내용
 -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,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
 - 응급환자 이송체계 및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
 - 응급의료 서비스 질 및 통계 관리, 응급의료 교육·훈련 홍보 지원
 - 「응급의료 시행계획」 및 「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」 수립 지원

-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, 응급의료위원회 실무위원회 운영
- 그 밖에 충청북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

5. 검토의견

가. 제출배경

- 도지사로부터 제출된 본 동의안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 6제3항¹⁾ 및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 제11조²⁾에 따라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임.
- 응급의료지원단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별도로 설치하거나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음.
 - 충청북도는 지난 해 8월(제411회 임시회) 의원발의로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를 전부개정하면서 집행부 및 응급의료 관계자들과의 협의를 통해 도 응급의료 분야의 컨트롤 타워로서 응급의료지원단의 설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 운영이 아닌 별도 설치·운영토록 규정하였음.
- 이에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5조제1항³⁾에 따라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에 대해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되었음.

1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③ 시·도지사는 제2항의 시·도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 다만, 시·도지사는 필요한 경우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2조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2) 제11조(응급의료지원단 설치·운영) 도지사는 법 제13조의6제3항에 따라 위원회 심의사항과 관련된 정책 개발 및 실무 지원을 위하여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을 설치·운영한다.

3) 제5조(의회동의 및 보고)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 국가 위임사무는 그 위임사무 소관 기관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, 자치사무는 충청북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.

나. 주요내용 검토

-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,
먼저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⁴⁾에 따른 위탁 대상 사무의
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판정하고, 같은 조례 제4조의²⁾ 각 호의 사항을
고려해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성이 있음.
- 응급의료지원단의 주요 업무는 아래 <표1>에서와 같이 응급의료 정책
개발 및 자문, 현황 조사 및 분석,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, 응급의료
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등 응급의료에 관한 전문적 지식을 요하는
업무들로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3호에 규정된
‘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요구되는 사무**’에 해당된다 할 수 있음.

<표1>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 주요 업무

- | |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1. 응급의료 정책 개발 및 자문 | 2. 응급의료 관련 현황 조사 및 분석 |
| 3. 응급의료 성과지표 개발 및 평가 지원 | 4.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 |
| 5. 응급의료기관 간 전원지침 마련 | 6. 제4조에 따른 시행계획 수립 지원 |
| 7. 다수의 환자 발생 시 응급의료 조치계획 수립 지원 | |
| 8. 응급의료 서비스 질(質) 및 통계 관리 | 9. 응급의료 교육·훈련 및 홍보 지원 |
| 10. 제20조에 따른 응급의료협의체 운영 지원 | |
| 11. 그 밖에 도가 수행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지원 | |

- 또한 민간위탁 적정성 측면에서도 집행부에서 제출한 검토항목별 의견

- 4) 제4조(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도지사는 법령 또는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
검정·관리업무 등 도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계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
위탁할 수 있다.
1.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
 2. 공익정보보다 능률성이 크게 요구되는 사무
 3. **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구되는 사무**
 4. 그 밖에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단순 행정사무
- 5) 제4조의2(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)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
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.
1.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
 2.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
 3. 경제적 효율성
 4.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
 5. 성과 측정의 용이성
 6.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
 7.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

<표2>을 확인한 결과, 관 직영보다는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위탁해 운영하는 방식이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됨.

- 응급의료지원단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13조의6 제5항6)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고,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 제16조7)에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 따라서 위탁 대상기관은 조례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 제한됨.

<표2>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의견

검 토 항 목	검 토 의 건
①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	•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	• 정책기반 응급환자 이송체계 마련을 위해 공공성이 있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 위탁을 통한 운영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③ 경제적 효율성	• 응급의료 관련 전문인력, 정보, 협업체계 등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 운영하여 경제적 효율성 극대화
④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	• 응급의료 분야의 전문지식, 인력, 네트워크 등을 활용하여 지역단위 응급의료체계 구축 가능
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	• 매년 사업계획에 기반하여 목표 대비 실적평가 등을 통해 사업성과 측정 용이
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	• 도는 수탁기관에 대한 지휘·감독 권한이 있으며, 위·수탁 계약 체결을 통한 운영방식 및 사업계획 관리를 통해 투명성 제고 * 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5조(지휘·감독)
⑦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 여건 등	• 응급관련 전문인력이 풍부한 응급의료기관 또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

- 단, 「충청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」에 따른 의회 동의는 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일부를 직접 운영하지 않고 기관·단체 등에게 맡겨 그의

6) 제13조의6(시·도응급의료위원회) ⑤ 시·도위원회 및 시·도 응급의료지원단의 구성·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시·도의 조례로 정한다.

7) 제16조(위탁운영) 도지사는 지원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운영에 관한 업무를 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응급의료기관 및 「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. 이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명義와 책임 하에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적정한지에 대한 의회의 동의를 득하는 행위로 시기 상 해당 예산의 성립 전(前)에 이루어지는 것이 절차상 타당할 것임.

-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 예산이 지난 해 12월, 2024년도 당초예산에 대한 의회 의결을 통해 성립된 이후 제출된 바, 그 사유에 대한 설명이 필요함.

※ 2024년도 당초예산

- 세부사업: 응급의료지원단 운영지원
- 사업비: 306,400천원 (기금 125,000천원, 도비 181,400천원)
*편성목: 자치단체등이전_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, 자치단체등자본이전_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

다. 종합 검토의견

-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 관련 정책개발 및 실무지원을 위해 설치하는 충청북도 응급의료지원단의 민간위탁 운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,
 - 「충청북도 응급의료에 관한 조례」 제16조에 응급의료지원단의 위탁 운영에 관한 사항이 규정되어 있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며, 운영의 효율성 및 효과성 측면에서도 위탁 운영 방식이 적정한 것으로 판단됨.
- 다만 담당부서에서는 수탁기관 선정 시, 전문성과 공정성 확보 측면에서 절차 상 만전을 기하고, 또한 수탁기관에 대한 철저한 지도·감독을 통해 위탁 사무들이 효과적이고 투명성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임.